

국외여행(기간연장) 허가 신청 안내

-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(1991년 출생자)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▲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

• 허가기준

- 국외여행(기간연장)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역이행안내 → 국외여행 ·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

• 출원기관

-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(대사관 또는 총영사관)
※ '국외이주' 또는 '국외취업'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
-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
※ 병무민원포털 → 국외여행 · 국외체재 →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

☞ 병역법상 연령을 표시한 경우 “○○세부터”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, “○○세까지”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

- 만약,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·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 되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▲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(병역법)

- 3년 이하의 징역(제94조)
- 40세까지 공무원·임직원 임용 및 채용금지,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(제76조)
-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(병무청 홈페이지) 공개(제81조의2)
-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(여권발급) 제한

□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